

기술보증기금 장애인 청년인턴(체험형) 채용공고

기술에 가치를 더하는 「중소·벤처기업의 No.1 혁신성장 파트너」
기술보증기금에서 장애인 청년인턴(체험형)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.

1 채용분야

- ☐ (채용인원) 장애인 청년인턴(체험형) 총 5명
- ☐ (근무기간) 11개월
- ☐ (근무지) 기술보증기금 본점 (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3)

※ [입사지원 시 유의사항]

- 본 채용은 체험형 청년인턴 채용으로, 계약기간 종료 시 연장 또는 정규직 전환불가
- 본 채용은 NCS기반 블라인드 채용으로, 입사지원 시 성별 · 학교명 · 가족관계 · 출신지 등 인적사항이 드러나지 않도록 유의

2 지원자격

- ☐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
 -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및 동법 시행령」에 의한 장애인
 - *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」에 의한 상이등급기준 해당자도 지원가능
 - 채용공고일('20.11.17.) 기준 청년*인 자
 - * 「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등」에 의한 만15세('05.11.17. 이전 출생) 이상 ~ 만34세('85.11.18. 이후 출생) 이하
 - 성별, 학력, 전공 등 제한 없는 블라인드 채용
 - 채용 확정('20.12.14. 예정) 후 즉시 근무 가능한 자
 - 기술보증기금 인사규정상 채용제한 사유('9. 기타' 참조)에 해당되지 않는 자

3

우대사항

* 아래 우대사항은 공고마감일 현재 **유효하게 등록된 자**에 대하여 적용

☐ 취업지원대상자(전형별 가점 10점 또는 5점)
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9조
-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6조
-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3조
- 「5·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20조
-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9조
- 「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7조 등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등 및 그 유·가족 등

☐ 사회적 배려 대상자(전형별 가점 5점)

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 제2호 및 제10호 등에 해당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로서 본인 또는 대상 가구 구성원
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

4

근무조건

☐ (근무형태) 기간제 근로자(체험형 청년인턴)

☐ (근무기간) 11개월

* 계약기간 만료 후 연장 또는 정규직 전환 불가

☐ (근무조건) 주 4.5일*(주 36시간)

* 근무시간 : 월요일~목요일 09:00~18:00, 금요일 09:00~14:00

☐ (보 수) 월 165만원(세전, 4대보험 본인부담금 포함)

☐ (직 무) 부서 고유업무(행정 및 통계) 및 사무업무 보조 등

* 직무 관련 상세사항은 [직무기술서](#) 참고

☐ (지원사항)

- 청년인턴 수료증(계약기간까지 근무자), 경력증명서(30일 이상 근무자) 발급
- 취업시험, 학과시험 응시 관련 증빙 제출 시 특별휴가 부여(최대3일)
- 우수청년인턴은 입사추천서 발급

5 입사지원서 접수

- ☐ (접수기간) 2020. 11. 17.(화) 14:00 ~ 2020. 12. 1.(화) 14:00
- ☐ (접수방법) E-mail(recruit@kibo.or.kr)로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,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·조치 동의서 제출(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 공고 내 '붙임' 양식)
- * 지정된 양식 외 임의양식 제출 시 전형대상에서 제외

6 전형절차 및 일정



- * 채용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전형단계별 합격여부는 이메일 또는 문자 메시지로 개별 안내
- ** 면접전형은 부산 본점에서 실시 예정

7 전형절차별 평가방법

전형절차	평 가 기 준
서류전형	자기소개서(100점), 가점(취업지원대상자/사회적 배려 대상자)
면접전형	직업윤리(25점), 대인관계능력(25점), 의사소통능력(25점), 문제해결능력(25점), 가점(취업지원대상자/사회적 배려 대상자)

8 제출서류

- ☐ 제출서류(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제출)
- 장애인증명서,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
 -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(해당자에 한함)
 -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, 차상위계층 증명서, 한부모가족 증명서(해당자에 한함)
 - 주민등록등본·초본(남자는 병역사항 기재)
 - 기본증명서(상세)
 - 최종학교 졸업(예정)증명서 및 성적증명서
 - 재학·휴학·중퇴인 경우에는 재학·휴학·중퇴증명서 및 최종학기까지의 성적증명서 제출
 - 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(예정)자는 대학교 졸업 및 성적증명서 추가 제출
 - 편·입학자는 편입 전 대학교 성적증명서 추가 제출

- * 관공서 등을 통해 발급한 서류는 '20.11.17. 이후 발급분'으로 제출
- *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 관련 증빙서류는 사전에 접수할 수 있음(별도 안내)
- * 제출서류의 주민등록번호는 반드시 **출생년도(예시. XX1117)**와 **주민등록번호 뒷자리**를 지우고 제출

9 기타

- ☐ 본 계획(절차 및 일정)은 **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확산 동향 또는 기금 사정에 따라 변경**될 수 있으며, 변경 시에는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(www.kibo.or.kr)에 공고합니다.
- ☐ 전체 채용과정에서 **블라인드 채용에 위배**될 수 있는 내용이 직·간접적으로 드러날 경우*, 이에 대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.
 - * 입사지원서의 주소, 이메일, 자기소개서 등에 성별·신체조건·학력·학교명·연령·가족관계·출신지·혼인여부 관련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
- ☐ 입사지원서의 작성내용 또는 제출서류가 **허위·위조**임이 판명되거나 고의로 **누락·추가**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, 채용 관련 부당한 청탁,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비리행위가 확인되는 경우, **합격이 취소**되거나 입사한 이후라도 **징계해직**될 수 있으며, 합격이 취소된 날로부터 **향후 5년간 기금 채용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**.
- ☐ 서류전형은 지원자가 작성·제출한 입사지원서를 기준으로 평가하며, 입사지원서 작성내용은 추후 증빙서류 제출 및 관계기관에 사실 확인 등을 통해 검증 예정으로, **입증 가능한 사실만을 기재**하시기 바랍니다.
- ☐ 입사지원서상의 작성내용 착오·누락·오기재나 연락불능, 합격자 발표 미확인, 자격 미비자의 응시, 증빙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.
- ☐ 면접전형 시 지원자 사정에 의한 **개별 면접일시 및 순서 변경** 등은 불가합니다.
- ☐ 합격자의 다음 단계 응시 포기, 입사 포기, 결격사유 존재, 결원 발생 등을 감안하여 예비합격자를 전형단계마다 운영하고, 해당 사유 발생 시 예비합격자 순위에 따라 개별 통보 및 추가 채용될 수 있습니다.
- ☐ 기술보증기금은 공정한 채용을 위해 응시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심사위원의 참여를 제한하는 이해관계인 제척·회피 제도를 운영합니다.
- ☐ 전형 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☐ 최종 합격한 경우에도 증빙서류 미제출, 결격사유 조희 결과에 따라 채용되지 않을 수 있으며, 결격사유 존재에 따른 합격취소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.

- ☐ 최종합격 전 제출서류는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, 입사지원서의 사실여부 검증, 본인 확인 등의 목적으로만 활용되며, 입사지원서 외 개인정보는 심사위원회에 제공되지 않습니다.
- ☐ 채용 확정 후 즉시 근무 가능하여야 하며 졸업, 재학, 이직절차, 군 전역 등의 사유로 **입사 유예는 불가**합니다.
- ☐ 기술보증기금 「인사규정」상 채용제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.

-
1. 피성년후견인, 피한정후견인 및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 2.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3.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4.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 5.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
 6. 병역을 기피한 자
 7. 전직 중 징계면직을 받은 일이 있거나 불미한 행위가 있는 자
 8.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
 9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10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11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면직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-

- ☐ 채용비리에 관하여 불합격자의 이의신청은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의 「채용비리 신고센터」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
- ☐ 채용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**이메일(recruit@kibo.or.kr)**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☐ 제출서류는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등에 따라 반환청구기간 내 신청한 반환청구에 한하여 반환합니다.

-
1. 반환대상서류 : 면접전형 이후 제출한 서류 일체
 2. 반환청구기간 : 최종합격자 발표 후 14일 이내
 3. 청구방법 : '붙임' 서식을 작성하여 전자우편(recruit@kibo.or.kr)으로 청구
 4. 반환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「개인정보보호법」에 따라 채용서류 파기
 5. 반환 제외 : 최종합격자의 제출서류, 홈페이지나 전자우편을 통해 제출한 서류, 끝.
-
- 기금의 요청 없이 지원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

붙임

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(양식)

■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[별지 제3호 서식]

채용서류 반환청구서

접수번호		접수일자
청구인	성명	수험번호
주 소		
반환장소 (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)		
반환청구서류		

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.

년 월 일

청구인

(서명 또는 인)

기술보증기금 인사부장 귀하

공지사항

-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
-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 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,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.
-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.